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하중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855
----------	------

발의년월일 : 2023. 11. 17.

발의의원 : 하중환, 김원규,
류종우, 박종필,
손한국, 윤권근,
이재화, 전경원,
하병문, 허시영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제12조 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5.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 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유실수단지·원예단지·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차. 보건소, 보건진료소

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8. (생략)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